

학칙 개정 (안)

1. 개정 사유

- 1) 별도법인의 산학협력단 설치
- 2) 전임교원 책임시수에 관한 규정 명확화(분반)
- 3) 2015학년도 학부제운영에 따른 각 학부별 실습과목에 대한 범위 변경

2. 주요골자

- 1) 산학협력단 설치 근거마련 : 10조
- 2) 실습과목의 범위 변경 : 33조
- 3) 전임교원 책임시수 조정 근거마련, 교수시간 산정에 관한 내용 추가 : 34조

3.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 10 조(부설기관) ① 본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</p>	<p>제 10 조(별도법인,-----) ① <u>본 대학교 내에 별도의 법인으로 부산디지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둔다.</u></p> <p>② 본 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</p> <p>③ <u>별도법인</u>,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</p>	<p>내용추가 및 항 신설</p> <p>항 변경 (①→②)</p> <p>항 변경 (②→③) 및 내용추가</p>
<p>제 33 조(폐강 및 분반) ① 매학기 개설 교과목중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이거나 강의콘텐츠 제작이 사정상 불가능할 경우 폐강하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도 있다.</p> <p>② 한 강좌의 최대 수강인원은 200명, 실습과목은 60명으로 하고, 초과 시 분반한다. 실습과목은 <u>각 전공의 교육과정에 명시된 과목으로 한다.</u></p>	<p>제 33 조(폐강 및 분반) ① <현행>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현장실습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과목으로 한다.</u></p>	<p>내용수정</p>
<p>제 34 조(교수시간)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(학기당 15주)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. 단, 계절학기의 강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<u>한다. 다만, 보직교원·겸임교원·초빙교원·시간강사의 책임시간은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교원의 교수시간은 각 전공의 담당시간을 통산<u>한다.</u> 단, 부설기관 및 타 기관의 강의 및 상담, 학생지도 등은 교수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 34 조(교수시간) ① <현행></p> <p>② ----- -- <u>하며,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보직교원·겸임교원·초빙교원·시간강사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----- ---- <u>하며, 시간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/u> -----</p>	<p>내용 수정 및 추가</p> <p>내용 수정 및 추가</p>

4.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붙임자료 : 학칙 전문 1부.

학칙시행세칙 개정 (안)

1. 개정 사유

- 1) 학점포기에 따른 장학 선발에 대한 규정 적용(장학규정 제18조 ②항)

2. 주요골자

- 1) 학점포기에 따른 장학 선발 기준 변경 : 34조 2

3.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제 34 조의 2(학점포기) 학점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① 학점포기 신청학점에는 제한이 없고, 기 취득한 성적 중 C+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. 단, 최종 졸업학기의 계절학기 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.</p> <p>②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, 전과생으로 전과전 취득한 학점은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없다.</p> <p>③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은 기 취득한 학기의 취득학점에서 삭제가 되어, 취득 학점과 평균평점 계산에서 제외된다. 단, 성적우수장학 선발시에는 포기한 학점을 포함한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④ 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이 필수(교양필수, 전공필수) 과목인 경우에는 동일과목(또는 대체과목)으로 반드시 재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포기한 과목은 복원되지 않으며, 수업료 또한 반환하거나 이월되지 않는다. 다만, 이미 취득한 성적에 의하여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의 각종 조치는 유효하다.</p>	<p>제 34 조의 2(학점포기) <현행></p> <p>① <현행></p> <p>② <현행>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 장학생 ----- -----.</p> <p>④ <현행></p> <p>⑤ <현행></p>	<p>내용수정</p>

4.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붙임자료 : 학칙시행세칙 전문 1부.